

서로몬 tv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오프닝멘트: 2018년부터 시작된 종교인과세가 금년에 3년 차에 들어섭니다. 지금 각 교회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9년도 지급명세서를 금년 3월1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급명세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학회장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Q: 우선 지급명세서의 뜻이 무엇입니까 ?

A: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2019년 1년 동안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종교인의 인적 사항과 금액,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Q: 지금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종교인과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의미를 좀 설명해주시지요

A: ‘종교인’이라고 함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기독교에서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를 말합니다.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기독교로 치면 각 지교회, 노회, 총회, 선교단체 등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목사님이나 전도사에게 목회와 관련된 지급한 사례비는 모두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지급명세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장려금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책정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Q: 종교인과세는 종교인이 자기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세무당국은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로 하여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종교인의 소득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합니다. 이른바 크로스체크의 수단이지요.

Q: 담임목사 한 사람이 자기 식구들 외 몇몇 교인들과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사실상 1인 교회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예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있으면 교회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교회라도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있고 소수의 교인들이 있으면 법상 교회로 인정되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교회에서 담임목사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교회의 대표자인 동시에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종교인의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담임목사를 포함해서 교인들의 낸 헌금은 교회의 수입이 되며 교회의 헌금에서 담임목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면 목사의 소득이 됩니다.

Q: 사례비가 아주 적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작은 교회에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 면세점 이하의 소득인지 여부, 대상자가 당해 종교단체 소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교회에 전임으로 사역하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례비,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나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빙해서 성경세미나를 하고 사례금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도 다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종교인은 근로장려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증빙하는 서류니까 세무당국은 이를 통해 전국의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누구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는 여부를 파악하게 되겠군요? .

A: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국가가 종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를 할 수단이 없었지만 지급명세서를 통해 국가는 종교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Q: 지급명세서가 가지는 의미는 교회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와 목회자가 개인종합소득 신고 하는 경우가 다르겠군요 ?

A: 예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종교인을 대신해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한 다음 세무서에 제출하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지급명세서에 갈음합니다. 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이 5월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먼저 제출되고 종교인의 세금신고와 납부는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양자가 다를 경우에는 불성실신고납부 의심을 사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A: 원래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즉 불성실신고의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부가하여 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Q: 제가 알기로는 불성실 가산세부과가 2년간은 유예되었다면서요?

A: 예 종교단체들이 종교인과세에 적응할 때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할찌라도 가산세부과는 없습니다. 일종의 계도기간으로서 세무서에서는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받아줍니다.

Q: 그러면 꼭 3월 10일의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군요 ?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기한내 신고를 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한후신고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서면(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Q: 만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A: 제일 문제가 되는게 5월에 개인종합소득확정신고와 함께 하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과 근로장려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지급명세서 없이도 근로장려금신청을 받아 주고는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12월2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장려금의 90%밖에는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Q: 예 좀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지급명세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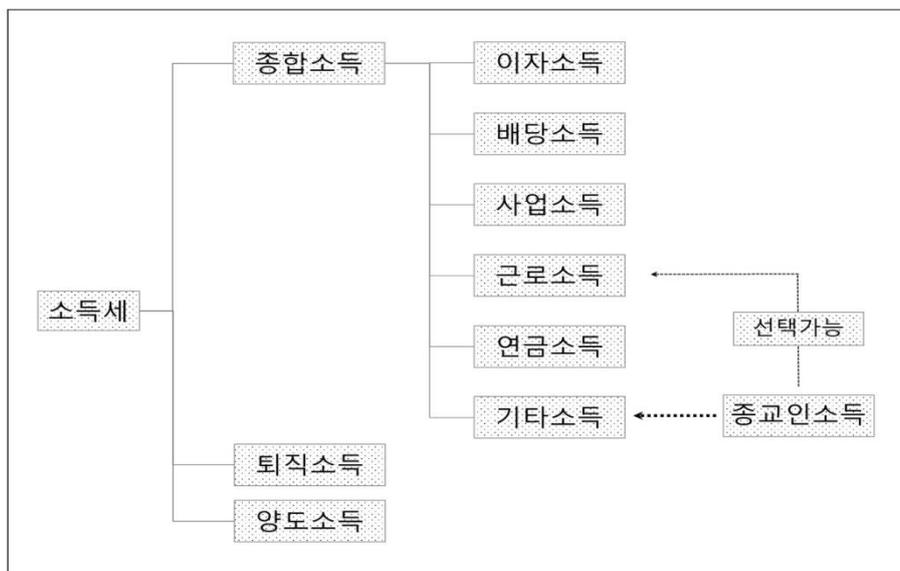
A: 지급명세서의 서식과 기재요령은 신고소득선택 여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

라 달라지므로 각 교회와 종교단체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구 분 | 기타소득 | | 근로소득 |
|-------------|--|---|-----------------------------------|
|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 지급명세서 서식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별지제23호서식(4)]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별지제23호서식(6)]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별지제24호서식(1)] |

Q: 예 이 표를 보니까 지급명세서 서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다르고 또 같은 기타 소득이라도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우선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A: 종교인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신고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등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 등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Q: 그러면 종교인소득을 왜 기타소득의 하나로 하였지요?

A: 근로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임에 비해 기타소득은 부정기적 소득이라는 차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신학대학교수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봉은 근로소득이고 가끔 외부에 가서 강연하고 받는 사례비는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소속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도 모두 기타소득의 하나인 종교인소득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마치 목사님들이 교회에 고용되어 월급이나 받는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거부감 때문입니다.

Q: 왜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종교인소득)외에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하게 하였습니까 ?

A: 종교인과세가 2018년 시행되기 이전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자진납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Q: 근로소득신고와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A: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은 과세표준(필요경비, 소득공제)와 징수세율, 세액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에서의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면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의 경우가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소득금액이 적어집니다. 반면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경우가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의 경우보다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소득으로 하는 것이 세액측면에서 유리한지는 종교인마다 다 다릅니다.

Q 근로소득신고와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의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

A: 종교인소득신고이든 근로소득신고이든 “종교인이 종교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는 소득의 개념은 같습니다. 또 소득신고납부방법으로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비과세, 종교활동비 세무조사 면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인소득/근로소득 대비표

| |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과세소득 |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 <table border="1"> <thead> <tr> <th>종교인이 받은금액</th> <th>필요경비</th> </tr> </thead> <tbody> <tr> <td>2,000만원 이하</td> <td>80%</td> </tr> <tr> <td>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td> <td>1,600만원 + 2,000만원 초과의 50%</td> </tr> <tr> <td>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td> <td>2,600만원 + 4,000만원 초과의 30%</td> </tr> <tr> <td>6,000만원 초과</td> <td>3,200만원 + 6,000만원 초 과의 20%</td> </tr> </tbody> </table> <p>예) 소득 5,000만원인 경우 2,900만</p> | 종교인이 받은금액 | 필요경비 | 2,000만원 이하 | 80%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의 50%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의 30% | 6,000만원 초과 | 3,200만원 + 6,000만원 초 과의 20% |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td> <td>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td> <td>750만원+1,500만 원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1,200만원 + 4,500 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p>예) 소득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p>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 750만원+1,500만 원초과액의 15% |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 1,200만원 + 4,500 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종교인이 받은금액 | 필요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만원 이하 | 80%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의 50% | | | | | | | | | | | | | | | | | | | | | | | |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의 30% | | | | | | | | | | | | | | | | | | | | | | | |
| 6,000만원 초과 | 3,200만원 + 6,000만원 초 과의 20%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 | | | | | | | | | | | | | | | | | | | | |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 | | | | | | | | | | | | | | | | | | | | |
|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 750만원+1,500만 원초과액의 15%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 1,200만원 + 4,500 만원 초과액의 5%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필요경비인정 |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금, 개인연금 저축 | (좌 등)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 (좌등, 표준공제는 13만원) + 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 소득세액공제 |
| 근로· 자녀장려금 | 수급 가능 | 수급 가능 |

자료출처: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2018.2. 한국교회법학회

Q: 일반적으로는 담임목사는 종교인소득, 부교역자는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A: 일선 목회자나 교회 등에서는 소득이 높은 목회자나 담임목사는 종교인소득을 선택하고 부교역자나 소득이 낮은 목회자는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유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혜택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에 있어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신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신고보다는 종교인소득신고(기타소득)가 바람직함. 작년에 근로소득신고를 하였더라도 금년에 종교인소득신고로 바꾸어도 상관 없습니다.

Q: 세금부담 면에서는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

A: 종교인별로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소득수준별로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수준별종교인소득/근로소득 세액비교

| 연지급 | 월지급 | 본인 | | 본인, 배우자 | | 본인, 배우자, 자녀1 | |
|---------|-------|---------|-----------|---------|-----------|-----------------|---------|
| | | 종교인 | 근로자 | 종교인 | 근로자 | 종교인 | 근로자 |
| 20,000 | 1,667 | 1,000 | 12,220 | 0 | 7,720 | 0 | 0 |
| 30,000 | 2,500 | 35,040 | 41,630 | 12,540 | 28,600 | 1,000 | 13,150 |
| 40,000 | 3,333 | 83,630 | 120,210 | 61,130 | 95,210 | 16,130 | 45,740 |
| 50,000 | 4,167 | 163,230 | 233,600 | 140,730 | 205,470 | 95,730 | 126,690 |
| 60,000 | 5,000 | 248,520 | 353,910 | 226,020 | 325,150 | 181,020 | 237,550 |
| 70,000 | 5,833 | 347,740 | 490,760 | 325,240 | 443,770 | 280,240 | 343,330 |
| 80,000 | 6,667 | 468,620 | 706,100 | 446,120 | 658,100 | 401,120 | 506,050 |
| 90,000 | 7,500 | 595,000 | 896,610 | 570,000 | 847,600 | 522,080 | 683,460 |
| 100,000 | 8,333 | 726,200 | 1,082,590 | 701,200 | 1,032,590 | 651,200 | 856,640 |

Q: 연말정산(원천징수)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A: 종교인소득신고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종교인별로 확정된 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별로 공제 감면 항목이 다 반영된 것이므로 종교인별로 한 장씩 작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교회에서 종교인별로 지급한 금액만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한 장에 여러 명의 종교인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그 서식이 다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종교인 개인이 5월에 확정신고 절차를 통하여 각종 공제 감면

을 반영하여 최종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Q: 연말정산은 무엇입니까 ?

A: 원천징수를 할 때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미리 공제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개인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 개인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동일합니다. 이러한 신고소득과 연말정산에 따라 작성할 지급명세서 서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

A: 교회행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납세대상자가 많은 중대형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편리하고 또 목회자가 일일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방식에 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어느 방법이든 큰 차이가 없지만 대부분은 개인종합소득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그 외에도 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예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구별해서 기재해야 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식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Q: 예 그러면 대부분의 소형교회나 1인교회에서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신고를 하되 원

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설명해주시지요

A: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별지 제23호서식(4)]"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서식이름]에서 관련서식 검색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서식은 원천징수를 하고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18.3.21.> (6쪽 중 제1쪽)

| 귀속 연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 | | | | | | | | 관리 번호 | | | |
|-----------------------------|---------------|--|---------------|-----------|------------|-----------|------------|-----------|------------|-----------|--------|----------|---------|----------|--------|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 | | | | | | | | | | | | | | |
| ① 법인명 (상호,성명) | ②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③ 소재지(주소) | ④ 연간소득인원 | ⑤ 연간출지급건수 | ⑥ 연간출지급액계 | ⑦ 비과세소득 | ⑧ 연간소득금액계 | ⑨ 세액 집계현황 | | | | | | | |
| | | | | | | | | ⑩ 소득세 | ⑪ 지방소득세 | ⑫ 농어촌특별세 | ⑬ 계 | | | | |
| 국세성당 | 123-**-***** | 서울 종로종로5가 | 2 | 21 | 42,000,000 | 4,500,000 | 9,600,000 | 85,140 | 8,500 | | 93,640 | | | | |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 | | | | | | | | | | 종교활동비 기재 | | | |
| 일련번호 | ⑭ 소득구분코드 | ⑮ 소득자성명(상호) | ⑯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⑰ 내·외국인 | ⑱ 지급연도 | ⑲ 지급건수 | ⑳ (연간)지급총액 | ㉑ 비과세소득 | ㉒ 필요경비 | ㉓ 소득금액 | ㉔ 세율 | ㉕ 소득세 | ㉖ 지방소득세 | ㉗ 농어촌특별세 | ㉘ 계 |
| | | | | | | | | ㉙ | ㉚ | ㉛ | ㉜ | ㉝ | ㉞ | ㉟ | |
| 1 | 77 | 이새빛 | 68****-1***** | 1 | 2018 | 12 | 18,000,000 | 2,500,000 | 14,400,000 | 3,600,000 | | 18,060 | 1,800 | | 19,860 |
| 2 | 77 | 한금연 | 76****-1***** | 1 | 2018 | 9 | 24,000,000 | 2,000,000 | 18,000,000 | 6,000,000 | | 67,080 | 6,700 | | 73,780 |

Q: 우선 이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4)]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A: [별지 제23호서식(4)]는 ❶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합계를 적는 구간과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소득내용을 적는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❶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를 말하며, 이 서식에는 '국세성당'이라는 가상의 단체로 설정하였습니다. ❷의 소득자는 사례비를 지급받는 종교인을 말하

는데 이 서식에서는 ‘이세빛’, ‘한금연’등으로 되어 있네요. ㉒에는 사례비를 지급받는 종교인별로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합계에서 ㉑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Q: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종교인소득 산정과 세금계산이 어떠한 순서로 되는지 설명해주시지요.

A: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egin{aligned} \text{㉒연간총지급액(비과세소득 제외)} - \text{㉒필요경비} &= \text{㉓소득금액} \\ \text{㉓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 &= \text{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징수세율} &= \text{산출세액} \\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감면)} &= \text{결정세액} \\ \text{결정세액} - \text{기납부세액} &= \text{납부할 세액} \end{aligned}$$

Q: 그러면 [별지 제23호서식(4)]의 각 항목별로 기재사항을 설명해주시지요.

A: 위 [별지 제23호서식(4)]에서 보면 ㉑ 연간소득인원란은 ㉕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㉕ 연간총지급 건수란은 ㉙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 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교회)가 지급하는 ㉖ 연간 총지급액계와 ㉚연간 소득금액계 (소액 부징수를 포함)는 소득자별 ㉑(연간)지급총액 합계와 ㉓소득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㉜ 소득구분코드는 숫자 77을 적습니다.

㉞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㉑ (연간)지급총액란은「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금액 (종교활동비)을 적습니다.

㉓ 소득금액란은 ㉒ (연간)지급총액에서 ㉑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㉔ 세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㉕~㉘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그 세액의 인별합계액을 ㉑~㉓에 적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Q: [별지 제23호서식(4)]에서 ㉒ (연간)지급총액란에는 비과세 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비과세 되는 종교인소득’이 무엇입니까 ?

A: 비과세 되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1) 학자금(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2)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월 20만원 이내의 차량비), 4)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5) 사택제공 비용의 5가지 소득을 말합니다. 이 5가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총액을 적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위 서식에서 보면 국세성당(종교단체)이 이새빛(종교인)에게 2018년 1년간 총지급액이 18,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이새빛이 국세성당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총 25,000,000에서 학자금 5,000,000 + 식대 1,200,000 + 여비 800,000을 공제한 금액임. 물론 국세성당에서 이새빛에게 무료로 사택을 제공한 비용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 [별지 제23호서식(4)]에서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종교활동비를 기재해야 합니까 ?

A: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보면 "5.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

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일선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알기로는 종교활동비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종교인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꼭 기재해야 합니까 ?

A: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서 종교활동비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에서는 종교활동비(목회비)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교활동비의 개념을 오해한 때문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종교활동비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인 동시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가 기재되면 목회자들의 목회활동 정보가 국가(과세당국)에 들어가게 되며 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그러면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종교활동비는 어떤 경우입니까 ?

A: 세무당국이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은 종교활동비 중에서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에 한정됩니다. 즉 종교단체에서 목회자들에게 종교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든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과세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인 종교활동비가 외형상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활동비가 얼마라는 것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Q: 예 그러면 교회가 종교활동비를 공적으로 관리하면 지급명세서의 기재할 필요가 없겠군요.

A: 예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켜 '구분기록·관리'라고 합니다.

Q: '구분기록·관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목회자의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다른 교회의 공적 경비 포함)를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즉 목회자의 사례비는 목회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든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지만 종교활동비(목회비)는 목회자에게 현금 또는 이체를 하지 말고 종교단체(교회)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목회자는 통장에 따른 법인카드(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장부도 사례비 장부와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교회의 재정장부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Q: 종교활동비를 구분기록관리하면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

A: 예 그렇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어디까지나 종교인들의 생활자금으로 지급한 사례비, 즉 종교인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를 위하여 재량으로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목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대상도 아니고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교회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세무조사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Q: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이미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종교단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

해야 겠군요. 그러면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종교활동비는 모두 비과세인가요? 혹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한도액은 없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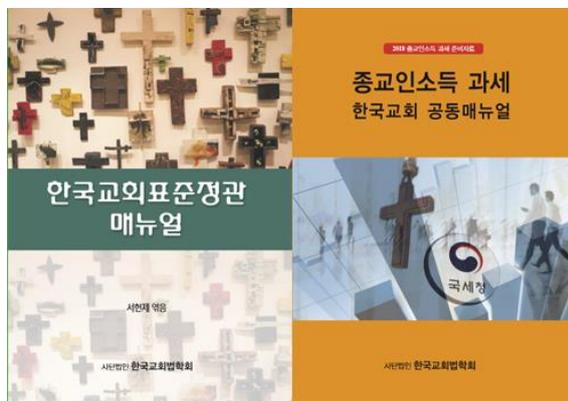
A: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 종교활동비 및 지급기준을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하며, 2) 종교단체의 규약(정관) 또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3)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며 이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교활동비의 상한액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외활동이 활발한 목회자일수록 종교활동비가 많겠지요.

Q: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교회정관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군요?

A: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회정관에 종교활동비의 성격이나 사용목적, 구분기록관리, 지출 증빙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Q: 혹시 그 내용에 대해 교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A: 예 교회법학회에서 발간한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과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Q: 혹시 종교활동비를 구분기록관리 하지도 않고 지급명세서에도 기재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

A: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포기하면 됩니다. 위 [별지 제23호서식(4)]에서 보면 ‘국세성당’에서 ‘이세빛’에게 사례비 1,800만원과 종교활동비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사례비를 2,050만원 지급하고 종교활동비란에는 0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25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Q: 다음으로는 [별지 제23호서식(4)]의 ㉔ 필요경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부분이 순소득으로 봅니다.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종교인이 받은 금액 (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
| 2천만원 이하 | 종교인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Q: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지요.

A: 가령 [별지 제23호서식(4)]에서 보면 ‘이세빛’의 지급총액이 1,800만원으로 2천만원이하에 해당하여 100분의 80즉 1,44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은 360만원이 됩니다. 또 ‘한금연’은 지급총액이 2,400만원으로 필요경비는 1,600만원 + 200만원 = 1,800만원이 필요경비가 되어 소득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총지급액이 높아질수록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Q: 다음으로는 종교인소득신고를 하고 연말정산까지 마친 경우에 작성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지 제23호서식(6)]을 작성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개정 2018.3.21.>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 | | 소득자 구분 | | | | | | |
| ① 귀속연도 | 2018년 | [√]종교인소득 지급 명세서(연말정산용) | | | | 거주구분 | 거주자1 | 비거주자2 | | | |
| | | ([]소득자 보편용 []발행자 보편용 []발행자 보고용) | | | | 내·외국인 | 내국인1 | 외국인9 | | | |
| | | | | |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 |
| 징수 의무자 | ② 종교단체명 | 국세성당 | ③ 대표자(성명) | 김** |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123-**-***** | | | | | |
| |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7*****-***** | ⑥ 소재지(주소) | 서울 강동구 암사동 ***-** | | | | | | | |
| 소득자 | ⑦ 성명 | 박** | | | ⑧ 주민등록번호 | 8*****-***** | | | | | |
| | ⑨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 | | | 종교활동비 기재 | | | | | | |
| 종교인 소득 | ⑩ 발생처 구분 | ⑪ 종교단체명 |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⑬ 발생기간 (연·월·일) |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 ⑮ 비과세 소득 | | | | | |
| | 주현) | - | - | 2018. 5. 6. ~ 2018. 12. 31. | 16,000,000 | 600,000 | | | | | |
| | 중전) | **성당 | 3 1 2 - * * - * * * * * | 2018. 1. 1. ~ 2018. 5. 5. | 6,000,000 | 360,000 | | | | | |
| 소득금액 | ⑯ 종교인소득(⑩) | | ⑰ 필요경비 | | | ⑱ 소득금액(⑯-⑰) | | | | | |
| | 22,000,000 | | 17,000,000 | | | 5,000,000 | | | | | |
| 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⑱) | | 5,000,000 | |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
| 이전제제 | 기본공제 | ⑳ 본인 | 1,500,000 | ㉑ 소득공제 등 종합합산도 초과액 | ㉒ 결정세액 | 50,000 | 5,000 | | 55,000 | | |
| | | ㉓ 배우자 | 1,500,000 | | | ㉔ 종합소득과세표준 | 2,000,000 | 가납부세액 | ㉕ 종(전)근무지 | | |
| | ㉖ 부양가족(1명) | | ㉗ 산출세액 | | | 120,000 | ㉘ 주(현)근무지 | | 31,200 | 3,120 | 34,320 |
| | 추가공제 | ㉙ 경로우대(명) | | | | ㉚ 공제대상자녀(명) | | ㉛ 차감납부할세액 | 18,800 | 1,880 | 20,680 |
| | | ㉜ 장애인(명) | | | | ㉝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명) |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2019년 3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국세성당 (서명 또는 인) 강동 세무서장 귀하 | | | |
| | | ㉞ 부녀자 | | | | ㉞ 연금계좌세액공제 | | | | | |
| | | ㉟ 한부모가족 | | | | ㉟ 정치자금 | | | | | |
| | ㊱ 연금보험료공제 | | ㊱ 기부금세 | | | | | | | | |
| | ㊲ 기부금(이월분) | | ㊲ 법정 | | | | | | | | |
| | ㊳ 종합소득공제 계 | 3,000,000 | ㊳ 우리사주조합 | | | | | | | | |
| ㊴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 ㊴ 공제 지정 | | | | | | | | | |
| ㊵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 ㊵ 표준세액공제 | 70,000 | | | | | | | | |
| | | ㊵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 | |
| ㉞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3 | 김** | 7*****-***** | | - | | | | | | | |

Q: [별지 제23호 서식(6)]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별지 제23호 서식(4)]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사례비총액 - 비과세소득 = 지급액(⑭), 종교인소득(⑯)이 됩니다. 종교인소득(⑯)에서 필요경비(⑰)를 공제하면 소득금액(⑱)이 나오며 여기에서 소득공제(㉑~㉚)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㉓)입니다. 과세표준에 징수세율을

급하면 산출세액(㉔)이 나오며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㉕~㉙)를 하면 결정세액(㉚)이 됩니다. 종교활동비 기재여부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Q: 그러면 [별지 제23호 서식(6)]과 [별지 제23호서식(4)]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A: [별지 제23호 서식(6)]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적공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재할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종합소득세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기재요령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매뉴얼” 참조하시면 됩니다.

Q: 이 매뉴얼은 어떻게 찾습니까 ?

A: 국세청홈피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로 들어가면 됩니다.

Q: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지급명세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자료나 기관이 있을까요 ?

A: 종교인과세공동TF에서 2019년에 “지급명세서 가이드”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하였습니다. 또 교회법학회에서는 “종교인과세”라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여기에 종교인과세관련 자료와 소식, 및 교육용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교회법학회 대표전화 1600-98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 스마트폰 앱은 어떻게 찾습니까 ?

A: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종교인과세”를 치면 다음과 같은 앱이 뜹니다. 이 앱

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A: 예 누구나 세금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귀찮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교회행정의 대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대다수의 소형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급명세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국세청의 정보망은 철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보다는 종교인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활동비는 구분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클로징 멘트: 장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급명세서를 작 적성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세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